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대상투자신탁

1.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
2.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
3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 - 재간접형)

□ 변경 사유

- ①세법 등 법규 개정 사항 반영
- ②매입시 적용 기준가격 관련 사항 변경
-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

□ 변경 내용

1.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

가. 집합투자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5조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<u>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매수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, 동 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자투자신탁에 대한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<u>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매수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, 동 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자투자신탁에 대한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33조(이익분배) - 세법 개정 사항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

	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	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-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2.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

가. 집합투자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5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<p>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으로 한다.</p>

제33조(이익분배) -세법 개정사항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-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		운용현황 업데이트(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, 다른 운용 자산규모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5)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(가)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(D+1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	(가)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중략> * 상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변경에 따라 201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		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비용 등,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자료 업데이트

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	<추가>	결산시 이익금 없는 경우 분배유보함을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	세법 개정사항 반영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재무 및 운용실적 등 자료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계 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요약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

3. AB 글로벌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 - 재간접형)

가. 집합투자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2.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각각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및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2.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25조(판매가격)	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	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

	<p>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더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더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)으로 한다.</p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부칙		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

나. 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		운용현황(다른 운용 자산규모)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 제한	(1) 2.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	(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) (1) 2.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
	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각각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및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4)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(가)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(D+1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	(가)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중략> * 상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라 201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비용 등,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자료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	세법 개정 사항 반영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자료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계 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	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

변경일: 2010년 3월 12일 (단,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.)

기 타: 자세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변경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